

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경기도지사(건축디자인과장)
(경유)

제목 관원 질의 회신(감리중간보고서 제출)

1. 경기도 건축디자인과-23493(2020.12.18)호의 관련입니다.

2. 질의요지

-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「건축법」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

3. 답변내용

-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,
-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법제25조제6항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한 공사감리자가 확인·작성한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, 질의와 같이 공사가 중지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감리 보고서의 작성·제출이 불가능할 경우(화재로 인한 자료의 소실, 사고로 인하여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기 곤란한경우 등)에는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를 통해 감리보고서에 작성(포함)되어야 할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,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,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,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·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권자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사무관대우	이경록	사무관승진예	정자	배대호	건축정책과장	전결 2021. 2. 3.	김성호
협조자							
시행	건축정책과-1059	(2021. 2. 3.)	접수	건축디자인과-2596	(2021. 2. 3.)		
우	30103	세종특별자치시	도움6로 11(어진동)	국토교통부	건축정책	/ http://www.molit.go.kr	
전화번호	044-201-4752	팩스번호	044-201-5574	/ rocky@molit.go.kr		/ 비공개(5)	